

# 소명서

[작성일 : 2023.10.3.]

1. 본인은 어떤 불법 자금을 수령하지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2. 이 사건은 회계담당직원(B)의 영수증 미비로 문제 삼을 사건인데, 동일인의 별건 조사도 무리인데 직원(B)가 근무하던 선거기획회사(C)의 다른 지역, 다른 시기, 다른 선거의 여론조사거래 당사자인 D와 E의 계약상 거래행위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본인과의 “심각한 관계”를 의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회계 담당 직원 B에게 의창구 선관위가 회계종료일 이전에 행정 지도도 않았고, 회계종료일 이후에도 행정 지도도 않고, 혐의 사안의 내용이나 의심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막연히 “심각하다” 고만 주장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모르나, 시정 조치<sup>치</sup>하겠다고 알려달라고 해도 “회계가 복잡해진다”라며 시정조치조차 못 하게 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 회계직원의 회계 실무에 관한 조치를 의창구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요구하여 백만 원 남짓한 <sup>영수증 미비의</sup> 회계 착오<sup>를</sup> ~~회계 착오~~ 종결하지 않는 이유도 모르겠고, 경남 선관위가 관여하여 계속 추상적인 이유로 <sup>위협을 가하는 이유</sup> ~~위협을~~ 가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sup>근거 없는 백지서 추첨은</sup>
5. 본인(A)으로서 아무런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어, 의창구 선관위 또는 경남 선관위가 무엇을 의심하든, 아무런 근거나 사실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지금에 사건화하여 풍문이 퍼져 나갈 수 있는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 상충하고 있는

b. 이 사건은 ~~원래의 경우~~ ~~실제 이익은 윤석영 대통령의~~  
~~신뢰 지위 리스크를 통해 상충하는 정치권 리스크의 희박한~~  
~~가능성과, 실제 권력 상충 리스크를 지어 경제가 갖는~~  
~~유가 윤석영 대통령 후보의 신변을 통해 리스크 부담을~~  
~~대주체 가늠해서 행하곤, 윤석영 후보의 권위와 이익의~~  
~~행위와 상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충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는 본인(A)과 권력 상충(B)와는 달리  
권력 상충은 C D E를 통해 상충 2 단계로  
구분 가능하며, 아무런 리스크 상충이 없으므로 수석에게만  
본인이 권위와 비교하는 방식이 잘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 상충 리스크의 문제는 의정선상에서  
권력 상충 리스크의 위배 또는 시정을 통하여 중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 I. 서론

1. 이 사안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의창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행정 지도 없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키워서, 선거를 앞둔 본인에게 정치적 위압을 가하려는 모종의 의도로써 근거 없이 사안을 무한 확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은 2022.6.1.~2022.12.31. 사이에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영수증의 미비로 시작된 사건이어서 회계 실무자의 영수증 추가 제출 및 시정으로 족한 사건입니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하 A라고도 한다)이 불법한 자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실무자인 강혜경(이하 B라고도 한다)도 불법한 자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4. 이 사건은 이 사건에 관한 회계 서류를 2023년 1월<sup>1일</sup>까지 제출하여야 했고 강혜경(A)이 2023년 1월<sup>27일/28일</sup>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창선관위 또는 갑이라고도 한다)에서 회계 서류제출 시기 이전에 회계 사무에 관한 교육이나 행정 지도가 있어야 했음에도 전혀 교육이나 행정 지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회계 서류를 제출한 2023년 1월<sup>1일</sup> 회계 서류 제출 마감 지한인 2023년 1월<sup>31일</sup> 사이에 회계의 미비가 있으면 그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나 행정 지도가 있어야 함에도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 서류 제출 시기 이후에도 회계 서류 제출 시기 이후에도 회계 영수증 구비에 문제가 있다고만 할 뿐 어떤 항목이 문제가 있으며 어떤 의혹점이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지를 본인(A)가

2023년 7월 10일 자로 서면질의 답변할 때나 그 후에 2023년 8월 11일에 의창선관위에서 대면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5. 의창 선관위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 선관위 또는 을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압박을 할 뿐, 본인(A)이나 강혜경(B)을 조사함에 있어서 '혐의 사실' 과 '소명해야 하는 항목' 을 전혀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6. 본인(A)이나 강혜경(B)이 어떤 불법 자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바가 없으므로, 의창선관위(갑)이나 경남 선관위(을)는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 모르나, 그 어느 경우라도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행위를 단 10%도 지적할 수 없음에도 "아주 심각한 사안" 이라고 추상적인 모함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7.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정치자금의 지출에 있어서 영수증의 미비로 시작한 사안임에도 본인(A)의 별건 사안도 불법 조사일 것인데, 본인(A)가 아닌 강혜경(B)의 통장을 들여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창선관위(갑)이나 경남 선관위(을)가 본인이 아닌 강혜경(B)을 조사할 이유도 권한도 없 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인 강혜경(B)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그 출입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출입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물며 그 제3자인 강혜경(B)의 자금출입내역을 본인(A)과 연결시키는 것은 얼토당도않을 뿐 아니라, 강혜경(B)의 자금 출입 내용은 그의 의사에 따른 다양한 거래이며, 본인(A)으로서 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일을 의창선관위(갑)와 경남 선관위(을)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라며 그 혐의 사실도, 소명이 필요한 항목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8. 이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터무니없는 혐의의 확대여서 본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사 초기부터 의창선관위 선거 관리 위원장이나 경남 선관위 선거 관리위원장에게 『조사대상자의 별건 조사도 금지되는 것이 법 원칙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3자의 통장 내용과 그에 나타난 제4자, 제5자의 거래 내용까지 본인(A)에게 의심을 두고 “심각한 사안” 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A)가 직원인 B에게 ~~농협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서~~ <sup>경매</sup> ~~구매~~ 행위를 시켰다 <sup>제3자인 강혜경(B)</sup>고 해서 ~~농협 하나로 마트나 이마트와~~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 본인(A)에게 의심을 찾고 법 위반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고 지나친 확산이다」라며 의창선관위나 경남 선관위의 업무처리의 비정상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의창선거관리위 원장이나 경남선거관리위 원장께서는 법관으로서 사무직원들이 일을 처리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때 살펴보겠다면서 선관위 사무직원들의 무원칙과 사실무근의 지나친 비약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에 중앙선관위에서 법과 원칙과 사무한계에 따라 이 사건을 통상적인 다른 업무와 같은 기준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9. 이와 같이 본인 A와 상관없이 제3자, 제4자, 제5자로 건너 뛰는 지나친 포괄적 추상적 혐의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본인(A)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회계직원인 강혜경(B)에게 국회의원 월급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내용조차 국회의원으로서 직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법 위반의 혐의를 두고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의 이의 이후에 혐의 내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10. 이처럼 의창선관위가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인지 경남 선관위가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인지도 불명하고, 혐의로 두는 내용과 소명을 요하는 근거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회계 실무자인 강혜경(B)이 2023년 1월 21일 회계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영수증 처리가 미비하다고 하여 영수증을 보강하겠다고 하여도 도대체 어떤 항목이 영수증이 미비한지 무엇이 의심을 일으킨 것인지, 항목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내역을 뽑아 증빙서류를 3~5회 걸쳐 제출하였음에도 계속 미비하다고만 이야기하고 미비하여 소명을 요하는 지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기재방식의 미비가 있는 듯하여 수정하거나 별첨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회계가 복잡해진다고 하면서 수정이나 별첨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의 무슨 혐의를 어떤 사유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본인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할 때도 어떤 혐의가 어떤 사유로 의심해서 조사하느냐고 물어도 알려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조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50건  
20건  
39 40건 - 30건 ] 5/28

## II. 의창구 선관위에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건

1. 의창구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때로부터 2022.12.31.까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113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 본인(A)은 회계 실무자인 강혜경(B)에게
  - ①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 ②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라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 ③ 정치자금 회계자료와 다른 의원실 샘플들을 구해주고
  - ④ 다른 의원실의 회계담당자들을 연결해주고
  - ⑤ 보좌관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회계의 개요와 국회 의정 활동비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알려주고
  - ⑥ 회계 보고 시에 의창구 선관위의 자문을 얻어 지침대로 하라고 수시로 지시하였습니다.
  - ⑦ 정치 활동 관련 정치자금은 본인(A)만 사용하고, 그 지역도 대부분 서울에서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수증을 모두 회계담당자 B에게 주었습니다.
  - ⑧ 본인 외에는 회계담당자 B만이 정치자금카드와 정치자금을 쓰게 하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⑨ 그리고 회계담당자 B도 사무용품, 임대료, 의정활동 홍보비 외에는 지출을 금했습니다.
  - ⑩ 상기와 같이 철저하게 정치자금 사용을 통제하였는데, 더 이상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3. 그러므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있어서 대부분이 본인(A)의 정치 활동 및 의정활동에 쓰였고 그 외에는 회계담당자(B)가 사무비용으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4. 그 외에 이 사건에서 소명되어야 하는 것은 본인(A)만이 정치자금 카드를 쓰다 보니 정치자금 카드를 일시 분실했을 때 본인(A)을 수행한 직원이 대신 지불한 경우와 회계담당자(B)가 정치자금카드를 일시 분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정치자금카드를 쓴 경우에 그 영수증으로 국회에 의정 활동비를 환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회계담당자(B)가 이 의정 활동비 환급제도를 착각하여,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신고하고~~ <sup>한 카드만 사용</sup> 그 정치자금으로 ~~자금의 소요를 의정 활동비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여~~ <sup>신고한 후 그 자료를 가진</sup> 정치활동비로 영수증을 제출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sup>개인</sup> (정치자금카드만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함)

이는 회계담당자(B)가 착오를 일으켜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이는 명백히 신고한 사항으로서 회계 담당자(B)가 자금을 불법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행정실무의 착오입니다. 이는 선관위가 회계 서류를 접수했을 때 지적했다면, 그에 따라 정확히 시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 지도가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직원들이 본인(A)의 수행 시에 정치 모임에 사용한 사항은 착오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횟수는 113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확한 횟수는 의창선관위나 경남 선관위가 그 영수증 사용 일시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113건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소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안이 심각하다고만 합니다. 본인에게 위반죄를 씌우기 위해 소명의 사안과 사실 지정을 알려주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감이 상태라 회계직원(B)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표를 떼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명했고, 영수증이 모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창선관위나 경남 선관위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113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인지를 알아야 소명할 수 있고, 가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무런 사실을 구체화하지도 않고, 행정 지도도 해주지 않고, 추가자료를 내어도 어느 정도가 남아있는지 알려 주지도 않고, 시정하겠다고 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6. 의창선관위나 경남 선관위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영수증 미비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으나 회계 직원(B)의 보고에 의하면 회계직원(B)이 정치카드를 분실한 경우 ~~액의~~ 열댓 건과 수행 비서가 대납했다고 청구한 영수증 열댓 건으로 영수증 미비 사건은 20-30여 건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 액수도 백만 원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하는 바입니다.

40여건

① 일백만 원 남짓에

모든 증빙 자료는 있는데 다만 이 금액은 정치자금카드  
계좌해야 하는데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인 / 정치자금카드  
결제하지 않은 것은 그 증빙서류에서 의뢰한 금액만큼  
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액수도 200여건에~~  
~~3-4000백만원 정도에서 증빙이 의뢰한 금액으로~~  
총액이 있는 합당한 영수증은 있는 채 행정부가  
검토되어서 분할한 후에 정치자금카드  
결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III. 회계 장부에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기재 오류

1. 회계책임자(B)가 국회의원(A)의 지역 사무실을 계약하고 2022.6.30. 그 중개 수수료 100만 원과 2022.7.29. 보증금 천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당시에 정치자금 통장에 자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피엔에이산업개발)이 돈을 지급해달라 하고, 계약은 해야겠다고 해서 회계책임자(B)가 마음이 약해 자기(B) 자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정치자금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오자 본인이 지급한 액수만큼을 자기(B)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회계 장부에는 지급받은 사람을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회계책임자가 지속적으로 의창선관위와 상의하고 보고했음에도, 의창선관위가 사전에 행정 지도나 교육을 전혀 않았으므로 생긴 일입니다. 또한 회계직원(B)이 회계신고 종료일 이전인 년 월 일에 회계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명칭을 통장에 찍힌 B의 명의로 변경하게 하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피엔에이산업개발)에게 통장으로 다시 보내고 이전에 임의로 자신(B)이 보낸 액수를 회수하게 하거나 ~~한번 지급~~ ~~한번 지급~~ 이는 회계직원(B)이 정치자금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무내용을 교육받지 못하고, 행정 지도조차 받지 못해서 일어난 착오입니다. 시정 9/24  
관청 9/14

그 후 회계 실무상 착오로 인한 잘못을 시인하는 바이므로 시정의 기회를 주어서 정정케 하면 되는 일인데, 계속 “심각하다” 고 하며 정정을 거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회계 직원(B)이 실질적인 수령자인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피엔에이산업개발)을 정직하게 하느라고 실질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일 뿐, 불법을 저지르거나 금원의 편취 의사가 없습니다.

기재나 실무 절차를 잘못된 것이므로 지적하여 신속히 정정  
케 하였다면, 지금까지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고, 통상의  
다른 지역 선관위는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도와주고 회계 직원(B)이 진해선관위와 일할 때는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시정 가능할 때 시정을 시켜 주었  
습니다. 회계 직원(B)이 수시로 물어보고 상의하여 일을 처  
리하였습시다만, 이런 기재 잘못된 오류에 대해 전혀 알림  
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정하겠다고 해도 시정을 받아  
주고 있지 않습니다.

IV. 2022.7.29. 의창선관위가 보전비용으로 본인

(A)에게 지급한 118,059,850원 ~~에 대하여~~

중 97,030,492원이  
대하여

1. 2022.7.29. 본인(A)의 통장으로 지급된 금원 118,059,850원은 의창선관위가 보전비용으로 지급한 것을 인정했으며, 그 일부 금원 97,030,492원이 강혜경에게 계좌 이체된 돈도 그 보전비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위 97,030,492원은 불법으로 조성된 금원이 아니며, 의창선관위가 불법으로 지급한 금원도 아니며, 선거 과정에서 신고되었고 본인(A)이 부담한 자부담금으로 본인(A)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3. 금원 118,059,850원 중에 21,029,000원은 선거 차량비로 지급되었고 97,030,492원은 본인(A)가 부담한 자부담금입니다.

이는 선거법에 따라 본인이 정치자금에 넣어서 본인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인데, 정치자금법상 본인(A)의 명의로 되어 정치자금으로 쓰게끔 한정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출금이 되게끔 되어있는데, 이는 정치자금 명목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97,030,492원은 본인(A)가 부담하였으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공영선거의 취지상 본인(A)의

개인 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개인 자금입니다. 단지 이를 개인자금의 명목과 분리함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본인 명의(A')의 통장을 만들어 이에 입금한 후에 개인용으로 사용하게끔 하는데, 이는 본인(A)의 개인 자금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97,030,492원이 본인(A)의 자부담에 의하여 선거법에 맞는 용도로 기재되고 선관위에 신고되었으므로 불법으로 조달된 금원이 아니며, 이는 의창구 선관위가 명백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97,030,492원이 공영선거의 취지에 따라 본인(A)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므로 이는 본인(A)의 개인 재산으로 반환된 것으로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며, 개인 재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통장인 본인 명의의(A') 통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금원 97,030,492원이 불법으로 입금된 금원도 아니고, 불법으로 출금된 금원도 아니라면 본인 명의의(A') 통장이 개설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서

- ① 이는 행정 절차상 97,030,492원이 개인 자산인 자부담금으로서 반환되었음을 명백히 하려는 행정 절차를 빠트린 것이라 할 것이며
  - ② 회계 실무자가 출금 형식을 분명히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의 위반이며
  - ③ 회계 실무상 행정 지도에 의해 신속히 수정될 수 있는 것이고
  - ④ 간결한 절차이나 필요한 수순이므로 의창선관위가 사전 교육을 하거나 행정 지도를 회계 기간 마감 전이나 마감 이후에 시정을 요구했으면 즉시 시정될 수 있는 '통장설정'의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⑤ 그럼에도 의창선관위는 '통장설정' 문제에 교육도, 행정 지도도, 시정 요구도, 시정하겠다는 회계직원의 수정 요청에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 ⑥ 본인(A)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과에 근무했던 분에게 문의한 결과, 이러한 '통장설정'의 문제는 중요한 과실로 다루지는 않는다고 경향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4. 본인(A)이 자부담금의 금원을 자부담금 대여자인 강혜경(B)에게 지급한 이후에는 그 사용은 강혜경(B)의 경제문제일 뿐 본인(A)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가. 본인(A)은 강혜경(B)에게서만 선거 기간 중에 자부담금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임과 자부담금을 강혜경(B)에게서 차용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선거 회계에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의창선관위는 이런 선거 회계에 근거하여 본인의 자부담금 97,030,492원을 포함하여 118,059,850원을 환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본인<sup>(A)</sup>은 강혜경<sup>(B)</sup>을 선거 기간 중에 선거 회계원으로 활동케 하였고 그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엄중히 자금 관리를 하게 하고 수시로 의창선관위와 상의하여 그에 따르라고 하였으며 후원금과 자부담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가능한 한 환급이 되는 항목으로 지출하고, 일체의 일체의 법 위반이 없도록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강혜경(B)은 진해선관위 및 여타의 선거 회계를 맡았으므로, 본인(A)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환급받는 금원을 자부담금과 정치자금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국회의원실의 회계를 담당하는 비서로 채용하여 의창구 선관위로부터의 환급금과 정치자금을 취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 본인(A)은 선거 회계를 명백히 할 겸 자부담금을 강혜경(B)에게서 차용하였으므로 2022.7.29.일자 97,030,492원을 강혜경(B)에게 지급한 이후에는 위 금원은 '별도의 통장 설정' 절차는 어졌더라도 강혜경(B)의 개인 재산입니다.

다. 따라서 강혜경(B)으로 나간 금원에 관해서 묻는 것은 본인(A)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혜경(B)이 정치인이 아니고 본인(A)의 지시나 행위나 관계에 의해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육하원칙에 대한 사실이나 사정이 전혀 없는 데도 '심각한 사안' 이라고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것은 '망상' 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배기동(D)이나 이미영(E)은 의창구나 창원사람도 아니고 대구나 경북 사람이며 본인(A)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다니던 작은 모임에서도 한 번 본 것인데, 그 모임을 제가 주도한 것도 아니어서 구체적 상황을 모릅니다. 장 (F)은 이 사건 대질신문 종료 시까지도 누구인지 몰랐으며, 강혜경(B)이 자신의 다른 계좌(B')로 돈을 보낸 것까지 본인(A)에게 물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 강혜경(B)은 미래한국연구소(C)라는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은 미래한국연구소(C)로 2018년경에 법률과 시사를 다루는 유튜브 언론을 해 볼까 하고 법인 설립을 하였으나, 2018년 8월에서 2019년 10월 사이에 국가자격증 관련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주로 부모님 집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고, 언론을 만드는 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진해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느라 미래한국연구소를 폐업하는 대신에 강혜경(B)이 근무하는 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미래한국연구소(C)와 본인(A)은 자금이나 행위나 컨설팅이나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

다. 본인(A)은 단지 고객으로서 2020년 진해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기획과 홍보 업무를 맡긴 적이 있고, 이번 2022년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고객으로서 미래한국연구소(C)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용역을 주고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본인(A)은 이러한 용역 계약을 강혜경(B)을 통해서만 이행하면서, 강혜경(B)에게 선거 회계 업무까지 맡기게 되었을 뿐 달리 특수한 관계는 없습니다.

←  
자금  
자금

바. 제가 알게 된 바는 배기동(D)이나 이미영(E)은 미래한국 연구소(C)의 고객이며, 본인(A)의 지역구인 의창구나 창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본인(A)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22년 5월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아무 당직도 없이 경남 정치권을 섭렵하고 있어서 경북 정치권의 상황과는 별개이고, 정치권 자체에서 발언권을 탄압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 따라서 환급금 중 97,030,492원이 자부담금으로 본인(A)에게서 강혜경(B)에게 넘어간 2022.7.29.일자 이후는, '별도의 통장설정' 이 없는 회계 실무상 절차가 빠진 것 일 뿐 불법 자금을 조달한 것도, 불법 자금이 유출된 것도 아닙니다.

97,030,492원이 자부담인 것은 명백한데, 강혜경이 97,030,492원을 가져간 것이 불법 자금이면 <sup>이런 행위를</sup> 회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굳이 하자면 의창선관위가 강혜경(B)에게 97,030,492원을 만들어서 정치자금 통장(A)에 넣었다가 다시 본인의 별도통장(A')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체시킨 후에 다시 강혜경(B)의 통장으로 가져가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97,030,492원이 강혜경(B)의 통장으로 넘어간 이상, 강혜경(B)이 '별도의 통장설정' 을 지금이라도 다시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만 있을 뿐, 그 금원의 사용은 본인(A)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인(A)의 별건 사건을 다루는 것도 조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런데도 동일인(A)의 별건 사건을 벗어나 제3자인 강혜경(B)의 금원까지 추적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사실이나 행위도 없는데 단순히 망상에 가까운 포괄적 의심을 가지고 '무언가 중대한 잘못' 을 지

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고 의심스럽습니다.

하물며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라는 식으로 강혜경(B)이 관

$\searrow F$

$\rightarrow E$

(D 안 E)

계했던 미래한국연구소(C)라는 회사의 다른 장소, 다른 시기, 다른 고객의 거래행위까지 끌고 들어와서 '중대한 사건' 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본인(A)이 강혜경(B)에게 하나로 마트나 이마트에 무언가 구매하게 하였다고, 농협의 모든 거래나 이마트의 모든 거래가 본인(A)에게 연결되어 '정치적 중대한 사건' 이므로 해명을 요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행위를 본인(A)에게 연결시키는 지나친 의심과 추궁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의창구나 경남의 선관위원장님께서 마땅히 이러한 일탈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일탈이 용납되는 선관위 구조가 이해가 안 되므로, 이런 상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 V. 2022.12.29. 11시경 음식 구매행위

2022.12.29. 11시경 3건의 음식 구매행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해명을 요하고 있는데, 다른 선관위에서 이러한 만원 내외의 음식 구매까지 해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위 3건의 매식 행위는 화합을 위해서 점심용으로 근처에 있는 세 군데에서 음식을 구매하여 먹으면서 토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창선관위가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므로, 귀찮아서 개인 카드로 쓸 것을 정치자금 카드로 착각하여 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최종 <sup>토론</sup> 대면조사 전까지 본인(A)이 서울에서 화합을 하며 사용한 정치자금카드 내역마다 수백 가지를 구체적으로 사랍, 장소, 이야기 내용, 상대방의 신분을 밝히라고 해서, 다른 선관위나 다른 의원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집요하게 강짜를 부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공무원 행동지침 예규에 30만 원이 초과할 시에 간략한 일시·대상과 회의 제목을 보고하게끔 한 자료를 갖다 주고서야 그치게 되었습니다. <sup>토론 자료가 없기 때문</sup> ~~사실상 손때를 사찰하려는 강짜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화합 상황 전체를 사찰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여 주십시오.

VI. 2022.6.23.~2022.12.31. 기간 비용 청구 오류 : <sup>공복연명</sup> <sup>현의제</sup>

2022.6.23.~2022.12.31. 기간 수행원들이 저를 대신하여 지불했다고 생각한 비용을 국회에서 지급하는 의정활동보조비에 청구해야 하는데, 회계 실무자(B)가 착각하여 정치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의정 활동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국회의원이 사용하여 정치자금카드로 지급한 것만 가능) 착각한 점인 것은 앞서 II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현의제  
계기

VI항 2022.6.23.~2022.12.31. 기간의 점은 II에서 설명한 것에 포함되는 데도, 또다시 이중으로 지적하여 문제 삼고 있습니다.

VII. 차량(체어맨 8892) 사용 건

본인(A)가 미래한국연구소 소유의 차량(체어맨 8892)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2.7.6. 전후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위 차량은 중고 차량이어서 몇백만 원 밖에 안는데 지방의 국회의원이 주말에만 내려가서 ~~의정활동을 하나~~ <sup>본인(아)가 3회 정도 3월 20일 2월 11일</sup> ~~반달에 내려가는~~ 날짜는 4~5회에 불과합니다. ~~몇백만 원에~~ <sup>본인(아)가 3회 정도 3월 20일 2월 11일</sup> ~~중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인수 전에 4~5회 사용한 것과 저렴하게 차량을 인수하면서 차량수리비를 매매가격에 더하여 준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닙니까? 이는 의창선관위와 경남 선관위가 본인(A)에게 무슨 혐의라도 씌우기 위해서 통상의 선관위나 다른 국회의원과 다른 터무니 없는 처사를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4. 본인(A)에 대한 질의 문답이 미래한국연구소(C)로 시작하여 명태균(G)으로 끝나는 것은, 결국 미래한국연구소(C)를 활용한 명태균(G)을 망라하여 파헤치기 위하여, 본인(A)의 회계 문제를 강혜경(B)을 통하여 미래한국연구소(C)까지 끌고 가서 명태균(G)으로 연결시키는 구도를 만들고 싶어서 이현령비현령 하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나 사실도 없이 '중요하다', '심각하다' 라고 하면서 백지상태인(불법 자금이 들어오지도, 불법 자금으로 선거 행위나 정치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디다) 회계 실무상 영수증 미비, 기재 오류, 통장 개설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과정상의 망라적인 사건으로 확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이 사안은 회계 장부상의 문제이고, 국회의원인 본인(A)의 실무자인 강혜경(B)의 회계 실무상 착오에 그치는 것입니다. 시정할 것을 시정하게 해주시고, 시정이 인되는 문제는 없는 실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어느 선관위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영수증 문제나 기재 오류의 문제, 통장개설이나 차량 인수 전후 사용 문제까지 질의하고 소명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6. 강혜경(B)이 본인의 통장으로 97,030,492원을 이체한 이후부터는 ~~선거법 문제나 정치자금법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를 명백히 잘라 주십시오.

본인(A)으로서는 의창선관위가 이 문제를 강혜경(B)에게 금액이 넘어가기 이전의 회계 실무 절차상의 문제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계 실무상 문제가 아니라 회계 실무의 방주위에  
도착해야 합니다. 회계 실무자(B)의 다양한 경제활동  
이후 그간속한 회계(C)에 대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의 관계없는 명태균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까지 수반기안이  
백지 위임서으로 - 22 - 회계 실무상 것은 갠치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 지금이라도 행정 지도로 수정되지 않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신고 전에 의창선관위가 교육을 하지도 않고 행정 지도도 안 해주고, 신고 이후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알려주지도 않고, 수정하겠다는 것을 받아주지도 않는 점도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의창선관위는 스스로 종결할 수 없다고 하고 경남 선관위는 의창선관위가 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sup>습니</sup>다, 이는 의창선관위가 행정 지도로서 시정조치를 하게끔 하여 종결하거나 회계 실무상 절차 위배에 행정 교육과 행정 지도 미비의 점을 참작하여 해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의창선관위가 회계실무상  
제3차의 방목에 이관한 것은  
2 방목에 한 것임이  
변경되지 않음  
제4차 제5차 제6차  
비목 하지 않음, 제4차 실시

## X. 결론

1. 이 사안들은 행정 지도로 지정될 수 없는 점이 전혀 없는 회계 실무상의 문제입니다.
2. 이 사건은 회계 실무상 문제를 떠나서는 동일인(A)의 별건 사건을 넘어서 제3자, 제4자, 제5자를 무한대로 점핑하는 오류의 사건입니다.
3. 불법 자금의 유입이나 불법 자금의 유출이 전혀 없습니다.
4. 제3자, 제4자, 제5자로 점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실도 근거도 행위도 의견 교환도 없습니다. 경남 선관위 또는 의창 선관위의 망상입니다.
5. 이러한 망상은 본인(A)의 회계담당인 강혜경(B)을 고리로 미래한국연구소(C)와 명태균(G)으로 점핑해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명태균을 면지털어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의 트집을 잡아내려는 경남 선관위(누구인지는 모릅니다)와 중앙선관위 차장의 모의에 의한 평지풍파식 트집 잡기입니다.
6. 의창선관위에서 회계 실무상의 문제는 회계 실무상의 문제로, 착오의 문제는 선관위의 교육과 행정 지도의 미비를 감안하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항목에서 할재되어야 함.